

2014.11.14

## '수입물품 가격신고서 서식개정에 따른 안내'

성실 가격신고 환경 조성을 통한 가격신고제도 정상화와 납세자의 책임 명확화 및 특수관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및 통관시스템 반영으로 인하여 다음의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# 특수관계자 여부 및 확인 요청 사항

#### • 해외거래처(판매자)와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? Y / N

귀사의 해외거래처 중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(대상) 확인 필요

#### ☞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,

#### • 다음 중 특수관계 해당 종류 '번호' 회신 요청

-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
-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
-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
-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
-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
-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
-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 하는 경우
-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
2014.11.14

## '수입물품 가격신고서 서식개정에 따른 안내'

### 특수관계자 여부 및 확인 요청 사항

☞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,

• 특수관계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 '번호' 회신 요청

(회계감사 자료 참조)

-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
- ② 재판매가격법
- ③ 원가가산법
- ④ 이익분할법
- ⑤ 거래순이익률법(영업이익률)
- ⑥ 거래순이익률법(총원가가산율)
- ⑦ 거래순이익률법(Berry Ratio)
- ⑧ 기타 ( )

세인관세법인에서는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, 관련이 있는 업체는 상기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별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